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09
----------	-------

발의연월일 : 2026. 7. 13.

발 의 자 : 윤준병 · 허성무 · 문대림
김 현 · 박홍배 · 안호영
박민규 · 양부남 · 박범계
이정문 · 서영석 · 박희승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매년 여름철만 되면 개발제한구역 내 주요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평상, 천막, 조리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미신고 상행위를 일삼는 불법 행위가 고질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자연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수질 오염과 쓰레기 방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계곡을 찾는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이익을 사유화한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옴.

더욱이 현행법상 부과되는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벌금 수준이 불법

상행위를 통해 얻는 막대한 성수기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아 사법당국의 단속 및 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개발제한구역 내 하천·계곡에서의 불법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불법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징벌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벌칙규정을 상향함으로써 불법 점용으로 취한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무단 점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1항 단서 신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기간 및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습으로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년”을 “2년”으로,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내에 그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서 신설>	제30조의2(이행강제금) ① ----- ----- ----- ----- ----- ----- ----- ----- ----- ----- ----- <u>. 다만,</u> <u>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u> <u>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기간 및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하여 다</u> <u>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u> <u>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u> <u>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u>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	④ ----- -----

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⑨ (생략)

제31조(벌칙)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신설>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1년에 4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⑤ ~ ⑨ (현행과 같음)

제31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상습으로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2조(벌칙) -----
-----2년-----
-----2천만원-----
-----.

1. 2. (현행과 같음)